#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44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4일 이영실 의원외 14명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2월 26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 (이영실 의원)

## 1. 제안이유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인격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수적임.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인식개 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첨부)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

-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2006년 12월 채택 되었고, 이 협약 제8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 함양,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개선 증대,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음.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 및 장애유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수단임.
-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서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 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1)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채용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등을 해소하여 실질적으로 차별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현황

○ 동 조례 제7조2)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

<sup>1)</sup>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sup>2)</sup> 제7조(장애인 인권중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연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매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증진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의 이해 및 에티켓,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와 예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 연도별 주요 실적 〉 3)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서울시(본청) 소속직원	358	524	495	384
자치구 소속직원	7,963	13,105	21,346	26,895
사업소 등 소속직원	61,800	61,718	54,620	54,341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5,996	9,573	10,601	12,298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13,540	14,034	12,584	26,064
활동보조인, 교사 등 일반시민	14,820	23,077	9,089	10,995

※ 이외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매년 수립하는 교육 계획에 따라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3) 출처: 「2020년 장애인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 추진실적 자료 재구성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sup>1. 「</su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sup>2.</sup>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sup>3.</sup>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sup>4.</sup>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sup>5.</sup>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sup>6.</sup>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장애인 복지정책과-5918)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교육을 시행해 왔음.
- 장애인 인권증진의 방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에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 함양,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개선 증대,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 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증진 등의 장애인식개선의 내용이 추 가되는 것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 애인 인권증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 및 장애유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
- 집행부에서도 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학생 및 일반시민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교육 내용에 인식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뿐 아니라, 학생 및 일반시민에게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내용에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장애인 인권증진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44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이영실, 김경영, 김경우,

> 김소양, 김용연, 김제리, 김혜련, 김화숙, 노식래, 박기재, 이병도, 이정인, 전병주, 조상호, 홍성룡 의워(15명)

#### 1. 제안이유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인격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수적임.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3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교육)
①・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③ (현행과 같음)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u>사항</u>
<u>6</u> . (생략)	<u>7</u> . (현행과 같음)